

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

(의안번호 제2994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8. 29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: 2025. 8. 29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5. 9. 10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보 류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관광진흥과장 김영국)

가. 제안이유

제302회 고성군의회(제1차 정례회) 2025. 6. 11. 원안 가결된 「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」과 관련하여, 2026년 예산 편성 요구액 증액에 따라 의회의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나. 위탁근거

- 1) 「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(위탁운영)
- 2)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, 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, 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

다. 주요내용

- 1) 위탁사무명: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
- 2) 위탁대상: 고성군 해양치유센터
 - 가) 위 치: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(자란도) 108번지 일원
 - 나) 연 면 적: 6,080.95㎡(대지면적 19,385.00㎡)
 - 다) 시설규모: 1개동(지하 1층, 지상 3층)
 - 지하 1층: 기계실, 전기실
 - 1층: 세탁실, 검사실, 상담실, 탈의실, 샤워실, 1종근린생활시설, 린넨창고, 식당 등

- 2층: 치유실(숙박), 요가/명상실, 마인드풀, 탄산풀, 개별치유실, 다목적풀, 패각찜질실, 소금찜질실 등
 - 3층: 치유실(숙박), 사무실, 회의실, 공유오피스, 피트니스, 다목적홀, 강의실 등
- 3) 위탁기간: 위탁일로부터 3년(예정: 2026. 1. ~ 2028. 12.)
- 4) 위탁방법: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
- 5) 위탁사무 내용: 해양치유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
-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·개발 지원
 - 해양치유센터 시설 내·외부 유지 관리 지원
 - 주요 치유시설, 숙박시설, 식당, 공유오피스, 편의시설 등의 운영
- 6)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- 해양치유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산업 형태로서 경영·서비스 분야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됨
 - 보직순환을 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치유산업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사업수익 및 센터 활성화 등의 안정적 운영·관리가 어려움
 - 해양치유센터의 운영은 전문 기업·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시행하되, 시설물 관리는 고성군, 그 외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시행
 - 운영 개시 후 안정적 운영관리가 확인되는 경우 단독(공공 또는 민간) 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·관리

라.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변경)

1) 변경내역

구분	당초	변경	증감액
소요예산	0천 원	9,543,047천 원	9,543,047천 원
정산방법	수익과 상계 처리 (비용 미발생)	운영원가 지급 후 이용료 수입 세입처리	

- 변경사유: 초기 운영 단계임을 감안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을 세입 처리하여 위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

2) 위탁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: 천 원)

연도	소요예산	인건비	운영비	기타	비 고
계	9,543,047	2,962,154	4,478,239	2,102,657	
2026년	3,096,655	961,199	1,453,158	682,298	
2027년	3,180,261	987,151	1,492,393	700,720	물가상승률 2.7% 반영
2028년	3,266,131	1,013,804	1,532,688	719,639	

3) 산출근거: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운영관리 전략 수립 용역(2024) - 운영원가 상세내역(2026년 소요예산 기준)

구 분			금 액(원)	비 고
계(운영원가+부가가치세)			3,096,654,733	
인건비			961,199,219	▲ 공무원 인력(5명) 인건비(249,188,506원) 제외
운 영 비	복리후생비	0.378	363,333,305	▲ 인건비(민간 25명) 기준으로 도출
	전력비	0.071	85,804,386	▲ 재료비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아 인건비(민간+공공, 1,210,387,725원) 기준으로 운영비 도출
	가스수도비	0.068	82,678,145	
	세금과공과	0.239	289,379,497	
	보험료	0.051	61,933,040	▲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「기업경영분석(2022)」 중 ‘예술, 스포츠, 여가 관련 서비스 부문’ 과 ‘숙박·음식업’의 주요 항목의 평균 반영
	수선비	0.201	243,225,068	
	기타경비	0.270	326,804,686	
순원가(인건비+운영비)			2,414,357,346	
일반관리비			6%	144,861,441 ▲ 순원가의 6%
이윤			10%	255,921,879 ▲ 순원가+일반관리비의 10%
운영원가(순원가+일반관리비+이윤)			2,815,140,666	
부가가치세			10%	281,514,067 ▲ 운영원가의 10%

※ 가동률에 따른 운영수지

(단위: 천 원)

구분	테라피 이용수입		롱텀케어센터		연간매출	운영수지	매출대비 이익률	비고
	자유의바다	고성의바다	2인실	4인실				
운 영 원 가					3,096,655	-	-	
가 동 률	85%	1,514,020	1,514,020	2,213,177	489,100	5,730,317	2,633,662	45.96%
	55%	979,660	979,660	1,259,432	489,100	3,707,852	611,197	16.48%
	40%	712,480	712,480	782,560	489,100	2,696,620	-400,035	-14.83%
	25%	445,300	445,300	305,687	489,100	1,685,387	-1,411,268	-83.74%

마. 위탁의 적정성 검토: 적정

바. 추진일정

- 1) 2025. 9.: 해양치유센터 운영 위탁 군의회 변경 동의
- 2) 2025. 9. ~ 10.: 해양치유센터 운영 위탁 사업자 공모
- 3) 2025. 12.: 해양치유센터 종합경영관리 매뉴얼 개발
- 4) 2026. 4.: 해양치유센터 설비 등 시범운영(가동 점검 등)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- 고성군 해양치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득하였으나 민간위탁 예산 20% 이상 반영된 중요내용 변경으로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.

○ 주요 내용 검토

- 의회(변경)동의요청: 민간위탁 예산의 20% 이상 증액으로 중요내용에 해당

구분	당초	변경안	중요 변경 사유
민간위탁 금액 (3년간 소요예산)		9,543,047천 원	(3년) 9,543,047천 원
정산 방법	수익과 상계 처리 (비용 미발생)	운영원가 지급 후 이용료 수입 세입 처리	소요 예산산출 (정산 방법 변경)

- 위탁연도별 소요예산: (2026년) 3,096,655천 원, (2027년) 3,180,261천 원, (2028년) 3,266,131천 원
- 산출근거: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운영관리 전략 수립 용역(2024) 보고서에 근거하여 운영원가 상세내역(2026년 소요예산 기준) 산출함.
- 관련 절차 이행 여부: 해당 조례에 따라 사전 절차를 이행

- 본 변경 동의안은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예산액이 20% 이상 변경과 함께 위탁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출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군의회의 변경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9. 10. 보류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